

용자 추천 세부내용

1. 용자대상별 지원한도 및 조건

① 시설설비 구입비

- 용자한도 : 20억원(소요자금 범위내)
- 상환조건 : 10년(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
 - * 중고기계설비 구입비 : 5년(2년 거치 3년 균분상환)
- 대상
 - 기계장비·생산시설 등 자동화, 개체, 신·증설 등 제작구매
 - * 중고기계 포함(감정평가액 범위 내)
 - 생산시설 또는 자동화 라인의 구성요소 시설
 - NC, CNC 공작기계 등 신·증설
 - 전용 자동화 시설
 - 범용기계 및 시험검사시설, 신규시설, 환경오염방지시설
 - 에너지 또는 원가절감을 위한 부대시설
 -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핵심부품
 - * 총 기계가격의 1/4이상으로 1천만원 이상인 제품
 - 기존설비에 자동화설비 추가설비
 - 자동화에 필요한 설계비(시설자금의 10%이내)
 - 생산설비의 부속 컴퓨터시스템 또는 주변기기 및 기계장치·소프트웨어 구입비 등
 - S/W 설계 제작·개발에 필요한 장비

■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설비에서 제외함

1. 차량 및 운반구
2. 치공구, 금형 등 소모성 부품
3. 건축물공사와 관련된 설비 또는 원부자재
4. 용자신청일 기준 이전에 대금지불과 관계없이 기 설치된 설비
(단, 시험 가동 중인 시설은 제외) 또는 잔금이 완납된 설비는 제외

② 건축비

- 융자한도 : 20억원(소요자금의 80%이내)
- 상환조건 : 10년(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
- 대 상 : 생산공장(사업장) 및 부대시설의 신축 및 증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
※ 부대시설물(창고, 기숙사, 복지시설 등)은 공장건축 설계에 반영된 부대시설에 한함

③ 공장 매입비

- 융자한도 : 20억원(소요자금의 80%이내)
- 상환조건 : 10년(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
- 대 상 : 법원, 자산관리공사, 은행 등을 통한 공매 또는 매매로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(기업당 1회 한정)
 - 경락 또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(잔금지급 전)
 - 토지(공장부지)구입비는 산업단지의 계획 입지 입주계약자
(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)

④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축비

- 융자한도 : 40억원(소요자금의 80%이내)
- 상환조건 : 10년(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
- 대 상 : 생산 공장(사업장) 및 부대시설 관련 건축비
※ 부대시설물(창고, 기숙사, 복지시설 등)은 공장건축 설계에 반영된 부대시설에 한함

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건립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·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에 의거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시설

⑤ 역외 유치(이전)기업 지원자금

- 융자한도 : 40억원(소요자금 범위 내)
- 상환조건 : 10년(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
- 대 상 : 지역 외 업체가 본사 및 사업장을 동시에 지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(유치)하는 기업의 건축 또는 기계설비 구입자금(시장이 추천하는 업체)
※ 대출 실행 후 사업계획서 상 이전계획에 따라 조속히 이전 완료하여야 하며, 기일 내 이전 하지 않은 경우 융자금은 즉시 상환하여야 함(부득이 기일 내 이전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)

⑥ 대규모 신규설비투자기업 지원자금

- 융자한도 : 40억원
- 상환조건 : 10년(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
- 대 상 : 1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설비(기계, 건축 등)투자를 하는 기업의 건축 또는 기계설비 구입자금

⑦ 풍수해 등 재해피해기업 복구비 지원자금

- 융자한도 : 10억원
- 상환조건 : 10년(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
- 대 상 : 재해피해기업에 대한 복구지원비 등

2. 융자금지원 산정기준

- 국내산 시설구입가격 또는 공장건축비 등의 산정
 - 계약서의 구입(도급)금액(자체 제작시설은 제작에 소요된 부품 및 자재구입비)
 - 단, 부가세는 제외
- 외국산 수입시설은 C.I.F(인도)가격, 환율은 신청일 현재의 KEB하나은행에서 최초 고시한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
 - 지원 결정 후 융자실행 시 수입시설에 대한 해당 외국환은행 결제일 기준으로 은행에서 고지하는 결제통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지원결정액 범위 내에서 지원
 - C.I.F 이외 가격은 계약서 표시가격
 - 국내구입이 가능한 외국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
- 기타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의 조정 함

3. 융자금 대출실행

- 가. 대출시점 : 시설공급자에게 기성고의 실적에 따라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출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실행 가능
-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현지 확인 후 융자
 - 수입산 시설 기계류 등은 선적확인서 또는 선하증권(B/L) 국내도달 된 때
 - 건축자금은 기성고 실적에 따라 실행. 단, 건축비를 신청사업자가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신청업체에게 지급

○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축비는 기성대출 4회 이내

※ 공사 기성고가 전체공정의 25%, 50%, 75%, 100%일 때 추천금액의 4회 이내 분할 대출

나. 대출기한 : 융자추천 결정(통보·발송)일로부터 6개월 이내(건축비는 1년 이내,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축비는 2년 이내)

※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■ 다음 사유시 1회에 한하여 대출기한 연장하되 명확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

- 대출수속 또는 보증절차 진행 중인 경우
- 설비제작 또는 지역특화사업 등 공동추진사업
- 외국시설도입 공장의 신규건설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

다. 대출실효 : 대출기간(6개월, 1년, 2년) 내 사업 미 완료시

라. 대출심사 :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취급은행별 심사(신용도와 담보 등 평가)

마. 대출요건 : 사업완료보고 및 사실 확인결과 통보 후 대출

- 1) 완료보고 : 해당업체 → 대구신용보증재단
- 2) 사실확인 : 수시 (대구신용보증재단 → 해당업체)
- 3) 결과통보 : 즉시 (대구신용보증재단 → 해당업체 및 취급은행)
- 4) 대출실행 : 수시 (취급은행 → 해당업체)

바. 대출금지급 : 납품·시공업체에 직접지급

사. 융자신청 변경

- 변경사유 : 신청 시설 및 금액(당초 추천 범위 내)
- 신청절차 : 사유명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신청
(해당업체 → 대구신용보증재단 → 취급은행)
- 신청시기 : 사유발생 즉시(사업시행 전)

아. 대출은행 변경

- 신청시기 : 사유발생 즉시(사업완료 보고 전)
- 신청절차 : 서면신청(해당업체 → 대구신용보증재단 → 취급은행)
※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

자. 추천 후 대출금 사용포기

- 신청시기 : 사유발생 즉시(대출취급기한 전)
- 신청절차 : 서면신청(해당업체 → 대구신용보증재단 → 취급은행)

4.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

가. 상환방법

- 정기상환 :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,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융자받은 업체가 대출은행에 균등분할 상환
 - ※ 납기경과 시 시중은행의 연체율적용 연체이자 징수
- 조기상환 :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*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- 강제상환 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즉시 상환 조치
 -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
 -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(부도, 휴·폐업, 융자시설물 조기매각 등)
 - 법령·조례·약정 등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- 기타 부당사유 발생한 때

나. 상환유예

- 유예사유 : 융자받은 업체가 유가상승, 원자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 할 경우 유예조치
 - * 객관적인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용보증재단으로 상환유예 신청
- 신청절차 : 기업체 → 대구신용보증재단 → 취급은행
- 유예결정 : 일시적 경영난, 향후 상환여력 등 유예 타당성 종합검토 후 유예여부 판단
- 유예조건 : 1회 3개월 (이자는 상환)
 - * 상환 유예된 원금은 차기 상환 원리금과 합산 상환

다. 사후관리

< 대구신용보증재단 >

- 대출업체 자금계획 이행점검(실태조사) : 연 1회 이상(표본조사)
- 조사결과 조치 : 부당업체 자금 회수
 -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
 -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
 - 법령·조례·약정 등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- 자금이용 성과분석 설문조사서 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및 향후 융자금 추천 제외

< 취급은행 >

- 용자금 대출약정에 의거 상환완료 시까지 책임관리
- 가동실태 수시 확인하여 부당행위 발생 시 용자금 조기 상환 조치
 -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도 및 휴·폐업한 때
 - 용자시설물의 조기매각한 때
 - 기타 부당사유 발생한 때

5. 용자 절차

○ 서류 접수

- ①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(해당업체)
- ② 취급은행 상담(담보 확인, 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은행 날인)
- ③ 서류 접수(대구신용보증재단)

○ 평 가

- ① 평가·승인통보(대구신용보증재단 → 해당업체)
- ② 서류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우편 발송

○ 대 출

- ① 사업완료보고서 제출(해당업체 → 대구신용보증재단)
- ② 현장확인(대구신용보증재단 → 해당업체)
- ③ 최종승인통보(대구신용보증재단 → 시금고은행)
- ④ 대출진행(해당업체 → 취급은행)

【별표1】

제조업 관련 서비스업

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	분 류 명
381	폐기물 수집운반업
382	폐기물 처리업
493	도로 화물 운송업
501	해상 운송업
521	보관 및 창고업
52913	물류 터미널 운영업
52941	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
52942	수상 화물 취급업
52991	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
52992	화물 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
52993	화물포장,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
76390	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(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)
74212	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